



현 행	개 정
<p><b>제3조(서류의 보존)</b> ① 법 제3조(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(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)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<u>기재된 서류를 말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법 제6조(선급금의 지급)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, <u>법 제13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, 법 제15조(관세등 환급액의 지급)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</u>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</p> <p>5. ·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3조의2(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)</b> ① 법 제13조의2(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)제1항 단서에서 ‘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’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)</b> 법 제1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)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</u></p> <p>2. <u>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·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</u></p> <p>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</u></p>	<p><b>제3조(서류의 보존)</b> ①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<u>기재된 서류(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, 송·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....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조의2(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)</b> ①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)</b> ① 법 제1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원사업자의 과산·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</u></p> <p>2. <u>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·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</u></p> <p>3. <u>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(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)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</u></p>

현 행	개 정												
<p>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</p>												
<p>4. 원사업자의 파산·부도·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</p>	<p>② 법 제14조(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.</p>												
<p>5.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7조(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) ① 법 제24조(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.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7 1045 660 1360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37 1045 392 1088">사업자단체</td><td data-bbox="392 1045 660 1088">하도급거래분야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137 1088 392 1185">1. ~ 8. (생 략)</td><td data-bbox="392 1088 660 1185">(생 략)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137 1185 392 1360"> 〈신 설〉</td><td data-bbox="392 1185 660 1360"> 〈신 설〉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자단체	하도급거래분야	1. ~ 8. (생 략)	(생 략)	 〈신 설〉	 〈신 설〉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01 1045 1224 1360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701 1045 970 1088">사업자단체</td><td data-bbox="970 1045 1224 1088">하도급거래분야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701 1088 970 1185">1. ~ 8. (현행과 같음)</td><td data-bbox="970 1088 1224 1185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701 1185 970 1360">9.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</td><td data-bbox="970 1185 1224 1360">제조위탁·수리위탁 및 건설위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자단체	하도급거래분야	1. ~ 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9.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	제조위탁·수리위탁 및 건설위탁
사업자단체	하도급거래분야												
1. ~ 8. (생 략)	(생 략)												
 〈신 설〉	 〈신 설〉												
사업자단체	하도급거래분야												
1. ~ 8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9.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	제조위탁·수리위탁 및 건설위탁												
<p>제12조(분쟁의 조정등) ① ~ ③(생 략)</p> <p>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12조(분쟁의 조정등) 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..... 60일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의2(과징금 부과기준) ① 법 제25조의3(과징금)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</p>												

##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

현 행	개 정
<p><u>제14조의2(준용)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 행령 제61조(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) 내지 제64 조(담보의 종류·평가등)의 규정은 법 제25조의 3(과징금)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·납부·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u></p>	<p>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<u>제14조의3(준용)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 행령 제61의2(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) 내지 제 64조의3(체납처분의 위탁) ..... ..... .....</u></p>

##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

제1조(目的) 이 기준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 第69條의2(過怠料)第1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賦課의 基準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適用範圍) 이 기준은 法 第12條(企業結合의 申告)의 규정에 의거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, 지연신고한 자, 허위신고한 자,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賦課金額의 決定) ① 法 第12條(企業結合의 申告)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義務 등(이하 “申告義務 등”이라 한다)을 위반한 자에 대한 過怠料 賦課基準은 별표와 같다.  
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基準에 의한 過怠料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不合理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4조(違反回數의 算定) ① 위반횟수는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申告義務 등의 違反으로 인하여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警告를 받거나 過怠料 賦課處分을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  
② 合併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.  
③ 商法 第530條의2(會社의 分割·分割合併)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分割 會社의 위반횟수는 分割新設會社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.  
④ 이 基準 시행 이전에 申告義務 등의 違反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는 위반횟수 산정시 합산한다.